

## 2025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

지역내 산·학·연·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,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지원하는 「2025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」 기술개발 연계지원 부문에 대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4월 21일

(재)경북테크노파크원장

### 1 지원개요

- (지원규모) 총 80백만원
- (지원프로그램 및 내용)

프로그램명	세부 지원내용	지원금액	비고
시제품제작 지원	- 오픈랩 도입장비를 활용하여 제작하기 어려운 시제품을 대상으로 지원	최대 4,000만원이내	

※ 프로그램당 기업부담금 10%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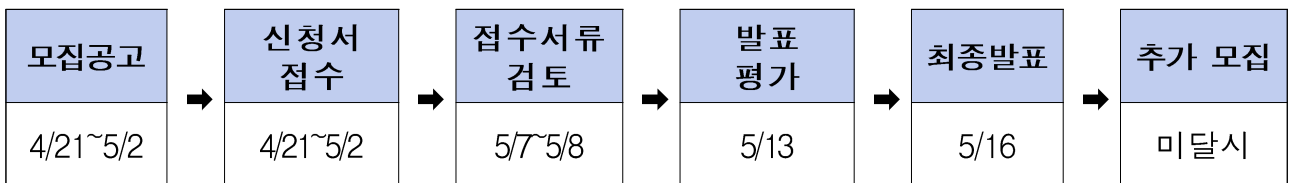
※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

○ (신청자격)

-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1,2세부 참여기업
- 사전제외 대상(공통운영요령 근거)
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-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④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
- ⑤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\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인 기업
  - \*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
  - \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

○ (선정절차)



※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○ (협약기간) : 2025. 5. 19.(월) ~ 2025. 10. 31.(금)

-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: 2025. 10. 31.(금) 까지

## 2 신청방법

- 서류 다운로드
  -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물 참조(www.gbtp.or.kr)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접수
- 담당자 : 경북테크노파크 개방형혁신센터 이수정 연구원

## 3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서식번호
필수 제출 서류	① 지원신청서	첨부 1
	② 상세 사업계획서	첨부 2
	③ 개인정보 이용동의서	첨부 3
	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	첨부 4
	⑤ 평가결과 수락협약서	첨부 5
	⑥ 사업자등록증 사본	-
선택 제출 서류	⑦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서류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이노비즈, ISO등	-
	⑧ 공장등록증 사본	-
	⑨ 제품, 기술 홍보자료 : 제품 카탈로그, 브로셔 등	-

## 4 추진일정

- 신청서 접수 : 2025년 4월 21일(월) ~ 5월 2일(금) 18:00까지
- 발표평가 : 2025년 5월 13일(화)
-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: 2025년 5월 19일(월) ~
  - ※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5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
경북테크노파크	이수정 연구원	054-437-9311	crystal2@gbtp.or.kr

## 6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

- (평가방법) : 발표평가
- (평가항목)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사업 추진 체계 (30점)	추진조직 및 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</li> <li>◦ 연구조직의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</li> </ul>	20
	연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</li> <li>◦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</li> </ul>	10
기술성 및 사업성 (30점)	기술성 및 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개발기술의 차별성,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</li> <li>◦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가능성 및 시장전망</li> </ul>	20
	파급효과	◦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	10
계획의 적정성 (30점)	목표의 명확성	◦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	10
	추진전략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</li> <li>◦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</li> <li>◦ 기초데이터,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</li> </ul>	20
기여도 (10점)	지역기여도	◦ 지역 기여도(고용률 및 생산액 등) 및 기여가능성	10
<b>합 계(100점 만점)</b>			

- (평가위원 구성)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명 이내

## 7 유의사항

-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(지원금액의 현금 10%이상)이 있으며,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(이체내역 등) 제출必
- 지원금은 사업완료(결과보고서 제출) 후 지급 원칙으로 하되, 선금금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선지급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
※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-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이 결정되며,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. 또한,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
-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프로그램 선정 시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성과의 활용상태, 수출실적, 매출실적, 고용실적, 특허실적 등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출해야 함